

자 체 통 계	기 안 처	관 리 과 이 천 국	전 화 번 호 463	근 거 서 류 접 수 일 자
수 상 담 임	관 리 과 장	건 설 국 장	부 시 장	시 장
관 계 관 서 명	하 수 과 장	사 계 과 장	사 계 과 장	내 무 국 장
기 안 년 월 일	1964. 4. 16.	시 행 년 월 일	1964. 4. 30.	보 존 년 한
분 류 기 호	서 전 관 1242: 412.	전 체 통 계	종 결	정 기
경 수 합 유 신 조				
제 목	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조정			
1. 아현천 복개공사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을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 조정코저 합니다.				
가. 부담금 부과내역				
1) ^{총공사비} 부과총액 2,256,314.-				
2) 부과총액 1,814,079.- (총공사비의 80%)				
3) 감면액 254,074.- (조례제13조제14조예외)				
4) 부과액 1,560,005.-				
5) 납입자. 金裕瑞외 281명				
안, 二				
"고시안."				

2
 4/30
 高利保確通

서울특별시 23 1056 443

제 목 土地所有權未確證免除通

(내용) 별첨 圖面 18 부러(除有地)에 對하여 免除方(國有) 275 坪中 別첨 西大門 稅務署長의 確證, 通報에 의하여 北阿峴洞 4~2 地積 287 坪은 (國有地임) 確證, 決定의 決定, 488 坪의 우선 免除 調整한 후 所有權 確證, 決定되는 대로 追加 調整코저 합니다. 끝.

서울특별시 고시 제833호

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2조 제3항에
의하여 다음 표선에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한다.

시기 1964년 4월 30일

서울특별시장 윤 치 영

- 1. 공사명 아현천 복개공사.
- 2. 공사종류 복개공사
- 3. 공사착공일 1차 1963. 3. 6. 2차 1963. 5. 28.
- 4. 공사준공일 1차 1963. 6. 23. 2차 1963. 11. 23.
- 5. 총공사비 7,256,314원 (1차 2,388,436원 2차 4,867,878원)
- 6. 부담금총액 1,814,078원
- 7. 부과구역 북아현동
- 8. 부과방법 일시부과

안. 二

수신 배부처 참조 발신 건설국장

제목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 고시문 송부

별첨과 같이 고시 되었기 고시문을 송부 합니다.

유첨 고시문 1부 끝

배부처 서국 1~10

안. 三

수신 배부처 참조 발신 시 장

제목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 고시문 송부

24

1055 서울특별시

별첨과 같이 고시 되었기 고시문을 송부 합니다.

유첨 고시문 1부 끝

배부처 서점 (2)

안. 四

수신 공보실장 발신 건설국장

제목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 고시

별첨과 같이 고시 되었으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
유첨 고시문 1부 끝